

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인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1	판교IC 통행료징수 민원대책을위한 특별위원회활동 기간연장안	□ 제안이유 ·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시 구성된 판교 IC 통행료 징수 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'99년 1월부터 그 동안 12차에 걸친 위원회운영을 하여 왔으나 2001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으로는 본 위원회가 목적인 바를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고 ·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료 부과방법 변경으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본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판교 IC 통행료 징수민원을 해결하고자 함. □ 주요골자 · 판교 IC 통행료 징수 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- 당 초 : '99년 1월 ~ 2001년 6월 - 번 정 : '99년 1월 ~ 2001년 12월 (6개월 연장)		본회의
2	판교톨게이트 통행료폐지(인하) 건의안	□ 주 문 · 한국도로공사에서 판교톨게이트의 통행료 부과 방법을 변경하여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통행료를 완전 폐지 또는 인하하거나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료를 폐지 또는 감면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함.		

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인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인 회
		☐ 재안이유 - 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를 현재 최저 요금제를 적용하여 1,100원을 부과하고 출퇴근시간은 30%를 할인하여 770원을 부과하던 것을 부과 방법을 기본요금,거리 병산제로 변경 하면서 출퇴근시간 할인없이 일괄 1,000원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중에 있는바 - 이는 우리 시민의 통행료 납부 부담을 가중 시키게 됨으로 통행료를 완전 폐지 또는 인하하거나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료를 폐지 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함.		
3	2000년도세입·세출결산 감사선임의건	☐ 명단 : 별첨	-	본회의
4	2000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	☐ 재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연도에서 지출한 예비비의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☐ 주요골자 - 지출결정액 : 총 5건 675,447천원 - 지출액 : 총 5건 658,245천원 - 불용액 : 17,202천원	회 계 과	각상위 위원회

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건명	부의안건요약	소관부서	소관위원회
5	성남시의회 자문교수단설치 및운영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직무 -의회의 권한에 관한 정책적 자문 -의회 제도에 관한 사항 -의회의 권한 중 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-기타 의회 의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· 구성 및 위촉(안 제3조,제4조) -자문교수단은 단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-자문교수단은 전공분야 별로 해당 상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 -자문교수단 의원은 자격은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전·현직 대학 교수로서 성남시 관내 학교에 재직 또는 주소를 둔 자 · 임 기 -2년으로 하되 인임 기능(안 제6조) · 회 의 -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	의회사무국	의회운영

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건명	부의안건 요약	소관부서	소관위원회
6	성남시결산검사 위원선임및운영 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상향조정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현행 위원의 일비 50,000원을 80,000원으로 상향 조정함 (안 별표 2)	회계과	행정경제
7	성남시사회복지 기금설치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성남시 노인 및 장애인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에 새로 조성하는 보훈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 ☐ 주요골자 · 기금수혜자의 범위에 보훈대상자를 추가하여 노인·장애인·보훈대상자로 함 (안 제1조) · 보훈복지 지원사업은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, 사회활동 참여육성,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, 기타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함 (안 제3조제2항 제2호) · 자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함 (안 제5조)	사회복지과	사회복지

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8	성남시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 안	□ 제안이유 ·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불절약 및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방침에 따른 상수도 요금 평균 8.8% 인상(안)을 성남시 소비자정책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 · 하고 · 상위 수도법과 관련, 일부 인용 조문의 미개정 부분과 불일치 부분을 개정하여 상수도공기업 운영에 원활을 기 하고자 함. □ 주요골자 · 정부의 불절약 시책에 따른 수도요금 현실화 방침에 부응하고 상수도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하여 평균 8.8% 인상(안 제23조 별표2) · 주민이 사용한 수도불 량 만큼 요금을 부담토록하여 불 절약시책에 주민이 동참할수 있도록 기본 요금제 폐지 및 구정별 정액 요금을 시행함 (안 제23조) · 중수도 사용자기 실질적인 요금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감면조항 보완 (안 제14조의1내지 제14조의3) · 상위법인 수도법과 불일치 부분 개정 (안 제15조) · 타시와 비교 상대적으로 높은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타 시와의 균형이 맞게 인하조정 (안 제34조 제2호) · 시장의 권한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. (안 제48조)	업 무 과	도시건설

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일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9	성남시도시계획 조례중개정조례 안	□ 제안이유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(2001. 1. 27, 대통령령 제17,111호)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상임지역안에서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,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함 (안 제31조제1항) · 준주거지역·중심상업지역·일반상업지역·근린상업지역·전용공업지역·일반공업지역·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공원·광장·하천·도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집한 경우 등에 있어서의 용적률 가산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(안 제33조제2항) · 정관지구의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예외 조항이 법령근거가 불명확하고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함(안 제38조) · 중심지마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최저고도지구의 층수제한과 일원화함으로써 주변권의 및 행정의 일관성 도모 (안 제42조제1항)	도 시 과	도시건설

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건명	부의안건요약	소관부서	소관위원회
		· 일반주거지역(제2종, 제3종), 준주거지역 및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중 석유판매소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(안 별표4내지 별표6, 별표19) · 경사도 조사방법 산정에 중 구간별경사도, 단면경사도, 선정식의 착오 부분에 대한 용어 정비(안 별표18)		
10	자연녹지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변경 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	· 청원인 : 중원구 상대원1동 378-12 번덕기 · 소개의원 : 한선상 의원 · 내용 : 상대원1동 378-12,13번지 상의 토지가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, 각종 건축제한 등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인근 토지와 형평에 맞게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 변경 요망하는 사항임	도시과	도시건설